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진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진”이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것으로서, 예술적·문화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사진작품”이란 작가가 사진을 통해 사상 또는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3. “사진산업”이란 사진의 창작, 제작, 유통, 전시, 교육,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진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진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및 사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진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진 및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사진 및 사진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진 창작 활성화 및 사진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진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사진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진 및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진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진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작품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저작권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29호에 따른 “권리관리정보”를 말한다)의 부착

2. 사진작품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작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진자료의 수집·보존·관리) 국가는 사진문화의 보존과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자료가 수집·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사진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산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산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